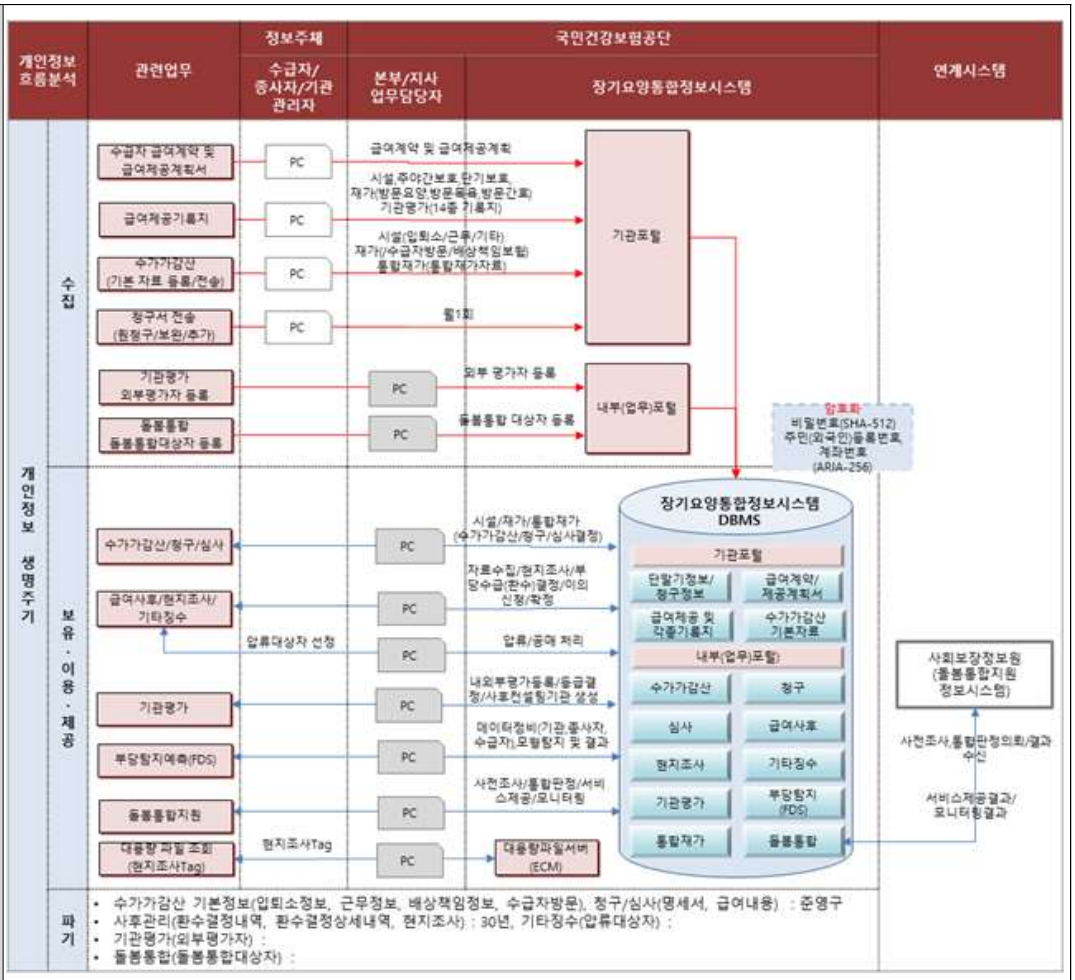
붙임1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양식

<table>
<tr><td colspan="9">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7">국민건강보험공단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>(주)한국전산감리원</td><td>평가기간</td><td>2025.10.27 ~
2025.12.31</td><td>평가예산</td><td colspan="3">□ 1천만원 미만
□ 1천만원 이상~3천만원 미만
■ 3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
□ 5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
□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3">장기요양 급여사후 및 기관평가, 통합재가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</td><td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 colspan="3">2025.07.01 ~
2026.04.27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7">○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및 지능화 되는 부당청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최신기술을 반영한 급여사후관리 체계 구축 필요
○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서 공단 역할 확립을 위한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
○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에 대응 가능한 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단 행정 신뢰도 향상 기반 강화
○ 현지조사 특성을 반영한 사전·사후관리 및 부당금액 산출 프로그램 개발로 처분에 대한 정합성 제고 및 업무 효율화 도모
○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개정('24.1.3.) 및 하위법령 시행('25.1월)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필요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3">• 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, 100만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, 기존에 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됨</td><td rowspan="2">추진예산</td><td rowspan="2">7,238,855,000원
(부가세포함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3">국민건강보험공단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3">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
• 의료・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</td><td>추진유형</td><td>□ 신규 구축
■ 변경(고도화)
□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5">-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7">가. 장기요양 급여사후 정보시스템 고도화
❍ 장기요양 부당이득금 환수관리 프로그램 개선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</td><td></td><td colspan="4">❍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통보 관리 시스템 구축
나.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
❍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리프로그램 구축
❍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 관리 시스템 개선
다. 효율적인 기관평가 수행·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기능개선
❍ 장기요양 기관평가 종합관리 프로그램 구축
라. 부당탐지예측시스템 기능 고도화
❍ 부당청구탐지시스템(FDS) 데이터 기반 정비
❍ 부당청구탐지모형(FDS) 신규개발 및 고도화
❍ 부당청구 예측 모형 확대 및 업무지원 체계 강화
마. 장기요양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기능개선
❍ 장기요양기관 청구·심사 기준 변경에 따른 기능개선
바. 통합재가서비스 전산시스템 고도화
❍ 통합재가서비스 본 사업 운영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구축
❍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Ⅱ 프로그램 기능개선
사. 돌봄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고도화
❍ 돌봄통합지원 정보 제공·통합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
❍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
❍ 데이터 상호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 변경내용 (변경인 경우)</td><td colspan="4">상동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개인정보 파일 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주체 수</td><td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>압류대상자</td><td>700 건</td><td>[필수항목]
납부의무자성명,
납부의무자주민등록번호,
체납처분원금, 체납처 분연체금,
체납처분사유, 재산유무, 소득유무,
물건유형, 물건명, 물건지번,
압류총금액, 압류일자, 해제일자

[선택항목]
해당없음</td><td>-</td><td>체납금 징수를 위한 압류대상자 선정 및 자산 관리</td></tr>
<tr><td>외부평가자</td><td>2,000 건</td><td>[필수항목]
평가자번호, 주민등록번호, 성명,
생년월일, 선정일, 위촉일,
위촉사유, 해촉일, 휴대전화번호,
은행명, 계좌번호, 이메일,
자격기준, 자격사항, 주소,</td><td>-</td><td>기관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자 풀관리</td></tr>
</table>

			평가영역, 평가년도, 활동이력(연도, 활동구분, 제증명출력) [선택항목] 해당없음		
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		1. 개인정보 생명주기 요약 • 수집: 수급자는 기관 급여 계약 및 급여제공계획서를 확인하고, 기관은 계약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며,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한다. 기관은 월 급여 청구를 위하여 수가감산처리 후, 청구서를 공단에 전송한다. 공단 업무 담당자는 기관평가를 위하여 외부평가자를 등록하고, 돌봄통합대상자를 등록한다. • 보유 및 이용: 업무담당자는 내부포털에서 수가감산처리, 청구 및 심사를 처리하고 기관에게 청구한 급여를 지급한다. 급여지급 후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급여사후/현지조사를 진행하고 부당수급금을 환수처리한다, 폐업/장기미수 등 압류 요건을 충족하는 압류 대상자에게 압류 및 공매처리를 진행한다. 내외부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기관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사후 컨설팅을 진행한다. 기관의 부당탐지예측을 위하여 데이터를 정비하여 부당탐지결과를 해당 담당자에게 제공한다. 돌봄통합대상자에게 사전조사 및 통합판정을 처리하고, 돌봄통합수급자에게 서비스제공 및 결과를 모니터링한다. • 제공: 돌봄통합대상자에게 대한 사전조사, 통합판정 결과, 서비스제공결과, 모니터링정보를 사회보장정보원(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)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연계를 통하여 제공한다. 제공 연계 시 SSL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여 중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. • 파기: 보유기간 경과, 처리목적 달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파기대상 개인정보파일은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7조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임시로 물리적 분리 보관하고 연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파기 결정 후에 지체 없이 파기처리한다. 2.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			

<table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향평가 기준</td><td>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</td><td>-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기준</td><td>-『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(개인정보보호위원회, 2025.10.)』 및 『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-7호)를 반영하여 평가함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·평가</td><td>1. 압류대상자, 외부평가자에 대하여 추가로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이 필요함.

2.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항목에 압류대상자, 외부평가자의 추가가 필요하고,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에 '사회보장정보원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'으로 제공 예정인 돌봄통합대상자 발취 및 신청정보, 사전조사/통합판정 결과 정보, 서비스제공 결과 정보의 추가가 필요함.

3. 압류대상자 및 외부평가자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법령에서 보유기간을 정한 경우는 그 기간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고,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 및 내부 결제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산정이 필요함.</td></tr>
</table>

		4. 장기요양 기관포털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함.
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	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	1. 압류대상자, 외부평가자에 대하여 추가로 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 예정임. 2.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항목에 압류대상자, 외부평가자의 추가 및 돌봄통합대상자 발취 및 신청정보, 사전조사/통합판정 결과 정보, 서비스제공 결과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추가할 예정임. 3. 압류대상자 및 외부평가자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보유기간를 산정할 예정임. 4. 장기요양 기관포털에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접속기록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상황 확인 및 점검을 공단 절차에 따라 적용할 예정임.
	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	- 해당없음
평가결과		1.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1장) 2025년 3월 실시한 '건강iN의 건강정보 이용활성화 개선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'에서 본 영역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였기에 평가에서 제외함. 2.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2장)는 7개 평가항목 중 이행 항목 4개, 부분이행 항목 3개로 평가되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식별됨. 3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(3장)는 25개 평가항목 중 이행 항목 21개, 부분이행 항목 1개, 미이행 항목 0개, 해당없음 항목 3개로 평가되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식별됨. 4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(4장)는 42개 평가항목 중 이행 항목 38개, 부분이행 항목 1개, 미이행 항목 0개, 해당없음 항목 3개로 평가되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식별됨. 5.특정 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(5장) 4개 평가분야 16개 항목은 평가대상과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함.